

제410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정호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8)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1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23.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정호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8)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3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3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3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3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3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3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3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3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3
1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3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	3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3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	3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운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	3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	3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3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2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3
23.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16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철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 번째,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여야 협의로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경남지역 교육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보호에 관한 청원(이수민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2)

-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정호성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48)

○위원장 김철민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의결로써 심사기간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보호에 관한 청원과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률 등과 유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16)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2)
1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0)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0819)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23.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안)

(16시08분)

○위원장 김철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일정 제23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같은 법 개정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그동안 여야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기존의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사위로부터 우리 대안을 반려받아서 번안 의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위원회에서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뿐 아니라 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셋째,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의무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안건과 같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22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1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 윤영덕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병수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며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09년에 제정되어 2013년 폐지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김영식 의원,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14항까지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거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되 시스템 정비와 이용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과 10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조항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조항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행일과 적용례 등 부칙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12항과 13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4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부터 20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21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 등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등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민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 하실 적에 여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거 관련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여기에 대출이자율이 높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대출이자율이 1.7%인데 이게 시중금리 대비는 굉장히 낮은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엔데믹 상황으로 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환개시 전까지 대출이자 누적되는 등 대출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경제 상황 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구를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철민 그 문제는 김영호 간사님과 이태규 간사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예,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유의 문구만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제안……

○위원장 김철민 두 분께서 합의하시면 내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장상운 차관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운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등학교 및 대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제고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대학생에게는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

구의 어려운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취약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여야 위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안을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민 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민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깐.

○유기홍 위원 예, 산회하신다 그래서……

○위원장 김철민 산회하기 전에……

○강민정 위원 저도……

○위원장 김철민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유보통합단장님하고 좀 의견을 들었는데요. 유아교육비·보육료 예산 편성 협조 요청문을 제가 보았는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만 5세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인상 단가는 월 5만 원인데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료 그리고 팔호 열고 급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자 또는 많은 시설장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어린이집은 굳이 꼭 팔호 열고 보육료를 달아서 보육료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조금 유보통합이 아니고 유보차별 아니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이거는 선의의 뜻으로 주시는 것인 만큼 팔호 속에 있는 보육료는 삭제시켜 주시는 것이 이렇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급식비라든지 그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유아학비하고 보육료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용도 내지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이상진 단장님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지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상진** 예.

○**위원장 김철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왜 괄호 안에다 급식비라고 넣은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급식비 선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걸 급식비라고 딱 찍게 되면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고요. 선제적인 사업을 안 하는 데는 이게 급식비라는 것을 조금 우선적으로 거기에다 쓰라고 해야…… 애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급식비 차이를 좀 보전을 해 보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우선적으로 급식비라는 말을 썼는데 시도별로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육료의 틀 내에서, 보육료 5만 원 인상하는 그 틀 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괄호 안……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법령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인 시·도교육청하고의 지침이나 고시 이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종환 위원** 괄호 안에 써 넣은 것 때문에 어린이집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먼저 예산안 의결에 이어서 법안 의결에도 장관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참석하셔야 꼭 의

결 외에 다른 현안질의도 가능할 텐데, 그래서 제가 차관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도 수요조사 이게 좀 졸속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요조사 결과 수치만 보면 최하 2100명에서 2800명까지 각 대학들이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각 대학별 원하는 수치를 못 주면 국립대가 어느 정도고 사립대가 어느 정도고 수도권이 어느 정도고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고의 비율이라도 좀 달라 했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정원을 정할 권한을 가진 부처가 교육부인데 아시지만 이게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도 태산 같은데 지혜를 좀 보태주려고 해도 자료를 안 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게 국립대병원에 우선을 뒤서 할 건지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수요조사를 해 놓으니깐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청 숫자가 몰려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차관이 우선 첫 번째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국감 때도 질의했었고 예결위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두 사람 다……

지금 의대가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전남이나 경북 안동, 순천, 목포 이런 도시들이 되겠지요, 국립대학교가 있는. 그래서 지방의대 신설에 대해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냐고 했는데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두 사람 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의 굉장한 숙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대 문제는 이번 수요조사와 별개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고 그리고 그 수요조사 한 결과 자료는 언제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먼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원래 범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처이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 그럴 때는 증원의 전체 규모를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교육부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요. 통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에, 의과대학에 몇 명을 증원할 것이냐라는 것은 교육부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심도가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의학교육점검반이라는 것을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합동으로 만들어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수요조사는 그야말로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25학년도에 최소한으로 늘릴 수 있는 범위를 조사를 한 게 2100명이고 그다음에 최대한 그러면 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2800명으로 1차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안에 물론 국·사립, 수도권·비수도권 대학들이 다, 40개 대학이 해서 내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그걸 받아 가지고 실제로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교원들은 갖추 수 있는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작업이 끝나기 전에 특정 대학이 몇 명을 냈다 또 국립이 몇 명을 냈다 이것을 밝혀 드리기가 조금, 이게 나가게 되면 또 단정적으로 특정 학교나 명수가 나가기 때문에 아직 확인 검증이 안 끝난 상태에서……

○**유기홍 위원** 지금 실사에 착수를 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대학별 자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비율도 못 준다는 건 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립대가 어느 정도 증원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편법적으로 수도권에서 사실상 교육하고 하는 이런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감사 때 우려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대학의 의견으로 수요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를 공개하는 게 조금……

○**유기홍 위원** 저는 그것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대학들의 기대만 엄청나게 부풀려 왔어요. 실사해서 2100명, 2800명 그 정도 역량이 된다고 치면 그 숫자 다 늘려 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 확인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그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올 것 같고요.

지방대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우선은 25학년도 정원 증원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단기적인 시급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신설을 어디에다 해 줄 거냐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서 우선적으로 25학년도에 몇 명을 늘릴 거냐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 문제는 언제쯤 논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법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요. 부총리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 점에서 그 원칙은 앞으로도 좀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디지털인재 양성하겠다는 게 이 정부 국정과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은 정원이 늘어나면 인기가 시들해질 거다. 이렇게 지나치게 한가한 낙관론을 얘기하던데,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날 경우에 그것이 이공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부터 의대 사교육 이미 시작됐는데 광풍이 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분

명히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거 장관 얘기하셨듯이 의대 정원 많아지면 인기가 시들해질 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는 일단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단기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대 정원이 지금 3000명이고 이공계나 다른 분야 정원의 규모는 거의 9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의대로 쏠림 현상이나 또 N수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공계라든지 또 다른 길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N수생 아닙니까? 합격할 때까지 시험 보는 N수생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저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법안 다룰 때나 예산 다룰 때 다 공히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단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법안 처리가 될 때 차관이 참여하셨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닙니다. 그날……

○**강민정 위원** 신문규 실장님만 참여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원래 타 상임위……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날 저희가 겹쳐 가지고요.

○**강민정 위원** 그런데 제가요 뭐가 겹쳤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 법안소위하고 행안위가 겹쳐서 저는 이쪽으로 오고 그쪽에 우리 실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민정 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를 할 때 몇 시간 전에 2시로 잡혀 있었던 것을 차관 일정 관계상 1시간 늦춰서 하든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차관대로 와서 하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교육부가,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관님이 연속 계속 참석 불참하신 것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잖아요. 이런 것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11월 23일 날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 그때 부대의견 4개가 달렸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주로 됐던 건 예산이었어요, 예산.

차관 우리 방에 와서 우리가 협의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고 사실은 행안위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일 행안위 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짚으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김교홍 행안위 위원장께서 부대의견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예산의 단순한 합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국가 차원의 추가 국고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번 부대의견에 관해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잉여재원을 통한 소극적 재원 마련이 아니고 이것도 국고를 통한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구구절절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서는 답변만 정확히 해 주시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기조실장이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님의 요구대로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날 전달은 물론 충분히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누리과정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10조가 넘는 규모로 예산이 되잖아요, 추가적인 것이.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이게 혹시나 치고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고득회계를 만들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깊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생되는 방식으로, 다시 재현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아이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애초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도 명확하게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 교육부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을, 3개월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게……

○**강민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보통합이 수십 년 동안 제기돼 왔는데 유보통합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합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서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이런 교육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 유아만 다니는 게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도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보통합이 정부조직법으로 구체화된 게 뭐였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던 보육 업무를 완전히 교육부로 전면 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의 중요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보육부가 사실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문제잖아요. 그

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단 한 번도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대상 아이들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아교육, 유아학교로 통합해야 된다는 건 아무도 이견이 없지만 도대체 0세에서부터 2세까지를 교육으로 볼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영아 예방접종이라든가 보육료 정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 번도 국회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실무 담당의 실질적인 기관인 교육감들도 논의를 안 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도 과연 교육부와 교육청이 맡는 게 맞는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조직법을 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통쳐서 사실은 사실상 논의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0세부터 2세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 부처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2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영아에게 적용되는 표준보육과정을 지금 애네들은 적용받고 있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로 만일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가 달라지고 그 업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범위가 넓어, 아이들이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사후적으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관계자들, 국회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통과될 때 부대의견으로 있었던 3개월 내 보고에 특히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저희가 통합 모델 시안이 나오면 아마 추계도 가능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 거다라

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국고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을 한다 해서 지방에 있는 현장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중앙부처만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업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이 마련되면 그 통합 모델을 두고 수많은 사회적 합의와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유보통합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동안은 현재하고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해소를 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첫걸음을 만들자는 의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영아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아동 업무는 스틸(still) 복지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양육수당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만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합의나 교육청하고 또 자치단체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조직법으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강민정 위원 얘기 잘했습니다. 그렇게 만일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만의 논의를 위한 게 시동을 걸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교육부의 교육·보육 업무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를 그 통합모델 체계 안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강민정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일부 관계자들 몇 사람들이나 전문가 몇 사람이 모

여서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것과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교육부에서 세워서 저희 의원실하고 교육위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민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 예방접종 이런 게 사실 우리는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유아보육법도 그러면 유보통합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들이 또 있잖아요. 유관 법들이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 법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이게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모호해질 수가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과 수반해서 변화돼야 될 영유아 관련 법들이 어떤 것들이 개정돼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조정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3분기 출산율이 0.7, 역대 최저로 나왔거든요. 곧 연말 되면 0.6으로 떨어진다는 이렇게 참 암울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 정책에 있어서 서둘러서 빨리 개혁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조조정하느냐. 이걸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서…… 아이들이 없는데 계속 억지로 그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조경태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이가 줄기 전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황하고는 서로 잘 분석해서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보육시설을,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어떤 유아시설, 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조경태 위원** 또 하나가 초중학교나 또 고등학교까지 죽 보면 이게 보통은 생활체육하는 시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이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학교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주로 학교장의 권한입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장이 안전 관리라든지 출입 문제라든지 이걸……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개방화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마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생활체육을 할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그나마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강당이라든지 학교 내 체육시설 이용을, 건립을 할 때 그런 시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속에서 그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이런 점도 점검해서 가지고 지금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물론 수업시간에 방해되면 안 되겠지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조경태 위원** 방과 후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좋으신 의견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 부분을 각 교육청의 교육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학교에 체육시설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독립적으로 떨어진 건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물들은 좀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민** 예.

○**안민석 위원**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서는 굉장히 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글쎄, 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이걸 정부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코로나 3년이 학교의 그런 문화를 바꿔 놓았고 교장선생님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학교 개방을 원치 않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안민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추세가 학교를 개방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변해 가다가 코로나가 다시 이걸 퇴행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학교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그걸 다시 잡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시·도교육감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협의회를……

○**안민석 위원**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첫째, 저는 학교 개방 상황 실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도별로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는 대로 더 잘되게 하고 안 되고 있는 데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또 교육감들 의지로 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교장의 의지인데요. 교장들에게 교장선생님들 연수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범으로는 아마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럴 때 정말 저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개방하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시행령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참고로 국감 때 하기는 한 건데 서울시교육감한테 왜 학교 개방이 안 되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컬선거 때 강서구를 갔더니 개방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교육감이나 공무원들은 앉아서 ‘다 개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한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라는데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들하고 상의하시고, 교육감들도 사실 제가 볼 때 현장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을 어떻게, 인식도 전환하면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국감 때는, 어떤 때는 전국의 개방 현황을 시도별로 순위를 1위부터 17위까지 매기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장선생님 마음·인식을 바꾸려고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개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교육부차관 장상윤** 하여야 한다……

○**안민석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아이들 수업에 방해 안 되고 안전에 문제없는데 개방 안 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무튼 잘 좀 챙기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우선……

○**안민석 위원** 조경태 위원님 지적에 너무 쉽게 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양당 간사님과 상의해서 교육부장관이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을 좀 용인해 줬었는데 다음부터는 장관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남국
김영호	김철민	도종환	문정복
서병수	안민석	유기홍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청가 위원(2인)

서동용 추경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전문위원	이지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관	장	상	윤
차관보		나	주	범
기획조정실장		신	문	규
인재정책실장		최	은	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김	연	석
대변인		박	성	민
정책기획관		김	정	연
지역인재정책관		구	연	희
책임교육정책관		소	은	주
책임교육지원관		고	영	종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		이	상	진